의안번호 제254호

발 의 연 월 일 2024. 3. 4.

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

임종용 의원외 2인

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임종용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제 254호 번 호

발의연월일: 2024년 3월 4일 발 의 자: 임종용, 강선구, 이길원

의원(3인)

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・의결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결정내역을 반영하고자 함.

○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 안」의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를 방지하 기 위하여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변경(안 제2조)

-기존: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 90만원, 보조활동비 20만원

-변경: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 120만원, 보조활동비 30만원

나.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(안 제5조)

-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 한 규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【붙임 1】
 -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, 제100조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, 제35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
- 다. 기 타
 - 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2) 입법예고 : 2024. 3. 5. ~ 3. 11. [7일간]
 - 3) 비용추계서 : 【붙임 2】
 - 4) 성별영향평가 : 【붙임 3】
 - 5) 국민권익위원회공문 : 【붙임 4】

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-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2조제1항 중 "90만원"을 "120만원"으로, "20만원"을 "30만원"으로 한다.
-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"제4조"를 "제3조"로, "여비를"을 "월정수당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.
 - 1.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「지방자치법」 또는 「예산 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 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
 - 2.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 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
 - 3.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
 -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

에 감액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했 개 정 아 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 예산군 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 ------의회(이하 "의회 "라 한다)의원 (이하 "의원 "이라 한다)에게 매 월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는 월 9 ----- 120만원-----0만원,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을 - 30만원-----예산군(이하 "군 "이라 한다) 소 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 하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5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의 제5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① 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----- 제3조-----규정에도 불구 하고 의정활동비 -----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 만.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 〈신 설〉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 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 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 의 1을 감액한다. 다만, 다음 각

〈신 설〉

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.

- 1.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「지방자치법」 또는 「예산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
- 2.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 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 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 니하였을 때
- 3.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, 이미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

【붙임 1】

관계법령

- □ **지방자치법**[법률 제19241호, 2023, 3, 21., 일부개정]
- 제40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 - 1. 의정(議政)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塡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 - 2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 - 3. 본회의 의결,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 -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0조(징계의 종류와 의결)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1. 공개회의에서의 경고
- 2. 공개회의에서의 사과
- 3.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- 4. 제명
-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- □ **지방자치법 시행령**[대통령령 제33966호, 2023. 12. 14., 일부개정] **제33조(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)** ① 법 제40조제2항

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 다. 〈개정 2023. 12. 14.〉

- 1.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: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
- 2.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: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"의정비심의회"라 한다)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, 재정능력,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,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
- 3.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: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
-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- 제35조(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)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한다.
 -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.
 -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. 다만,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

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.

-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수 있다.
-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. 다만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□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**[법률 제19268 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- 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.

【붙임 2】

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제2조 의정활동비의 지급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의정활동비 인상분 400천원×지방의원 수×12개월

3. 비용추계의 결과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세입	소계(a)	52,800	52,800	52,800	158,400
세출	의정활동비(b)	52,800	52,800	52,800	158,400
□총 비용(a-b)		_	_	_	_

(단위: 천원)

(단위: 천원)

4. 재원조달 방안

연도 구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국 비	_	_	_	_
도 비	_	_	_	_
군 비	52,800	52,800	52,800	158,400
민 간	_	_	_	_
기타(지방채, 기금, 예치 금 회수 등)	_	_	_	_
합 계	52,800	52,800	52,800	158,400

5. 작성자 : 의회사무과장

【붙임 3】

안전한 개인정보 처리,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



예 산 군



수신 예산군의회의장(의회사무과장) (경유)

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(2024A충남예산016)

- 1. 충청남도 예산군 의회사무과 -1256 (2024. 2. 26.) 호와 관련입니다.
- 2. 귀 부서에서 제출한 「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, 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, 제출한 체크리스 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



여성가족립장 절휴경 주투관 가족지원과장 이불미

함조자

시행 가족지원과~9080 (2024, 2. 27.) 접수 의회사루파-1288 (2024. 2. 27.)

우 32435 출험남도 예산군 예산을 군청로 22, 예산군청 가족지원과 / www.yesan.go.kr

전화번호 041-839-7912 팩스번호 041-839-7909 /greentea83@korea.kr /대국민 끝개

인구가 힘이다! 예산꽃 살아요!

【붙임 4】

Anti-Corruption & Civil Rights Commission



국민권익위원회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제도개선 권고(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)

- 1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- 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'지방의 회의원 의정비 예산당비 방지 방안'을 제도개선 권고(불임1)하오니, 조치기한 내에 실 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3. 아울러 우리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관리를 하고 있으며,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'제도개선 추진계획서(불임2)' 및 '단위과제별 이행실적 (불임3)' 양식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,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제도개선 추진계획서(불임2): '23.1.25.까지 제출
 - ※ 단위과제별 이행실적(불임3)
 - ? 행정안전부: '25.1.31.까지 제출(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)
 - ? 지방의회: '24.1.31.까지 제출(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)

불임: 1. 제도개선 의결서 1부

- 2. 제도개선 추진계획서(양식) 1부
- 3. 단위과제별 이행실적(양식) 1부. 끝.

국민권위원회 의 이원회인

수십자 행정안전부, 243개 지방의회

권익개선정책 전점 2022, 12, 28,

^{혈접사무관} 길열욱 국국장 약종삼

현조자

시할 사회제도개선과-3742 (2022, 12, 26,) 접수 의회사무과-6538 (2022, 12, 27.)

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20, (국민권익위원회) / www.scrc.go.kr

전화번호 044-200-7257 팩스번호 044-200-7914 /ugiok@korea.kr /대국민 공개

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. 내 삶이 달라집니다.